

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[별표 10] <신설 2024. 5. 9.>
 2024년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
관세율표 번호		품명	규격 등	세율 (%)	한계수량
호	소호				
0704		양배추·꽃양배추·콜라비(kohlrabi)·케일(kale)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(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
0704	90	기타	양배추(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)	0	6,000톤
0806		포도(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
0806	10	신선한 것		5	수입전량